
AI 방역관리지구 방역 특별관리 추진 계획

2014. 10.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1 추진 배경

□ 철새가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추정되고, 주로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철새군집지역 주변 등에서 AI가 발생*함에 따라 철새와 가금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

* 안성, 천안, 음성 등 금번 발생시군 중 재발시군(12개소) 대부분이 철새도래지에 위치

○ 따라서, 철새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되어 있어 AI 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'AI 방역관리 지구'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필요

2 AI 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추진계획

□ 상시에찰 강화

○ 기존 "AI 상시에찰 검사 추진계획"에 따라 추진 중인 야생 조류 분변 및 폐사체 모니터링 검사 대상 지역 변경

* (기존) 집중관리지역, 철새도래지 등 → (변경) 방역관리지구

- (야생조류) 기존 검사물량* 시·도 위생시험소별 신규 검사물량*을 배정하여 증가토록 함

* 수의과대학이 검사하는 10~12월 물량으로 3,528건(17,640점)

** 각 시·도의 하천 및 논·밭의 주요 철새도래지 중 수의과대학에 의뢰하는 지역과 중복 배제하여 2,000건(10,000점)을 추가하여 가축위생시험소가 추진

- (가금) 기존 예찰검사 물량 중 방역관리지구내 가금 정밀검사

* 종축(종오리, 종계 등) : 1회/월

* 육용가금(육용오리, 육계 등) : 도축 출하전

* 산란용가금(산란계, 메추리 등) : 1회/격월

* 기타 가금(타조 등) : 최소 1회/격월

- 전화·임상 예찰(주 1회) 및 정밀검사*를 강화하고, 가상방역 훈련(CPX)** 강화 등 비상시 대비 철저

* (현행) 오리 1회/분기, 닭·기타 1회/반기 → 오리 2회/분기, 닭·기타 1회/분기

** (현행) 매년 도별 3개 시·군 이상 → (개선) 매년 지구내 전 시·군 실시

□ 철새 대응체계 구축

-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철새 AI위험 알림시스템 운영(농식품부)

* 환경부·농식품부(철새 관련 정보파악) → 농식품부(철새정보 통보) → 지자체·협회 등(농가에 경보발령) → 농가(소독 등 강화)

- 위치추적기 부착 철새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*으로 철새의 국내 도래·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지자체 등 통보(상시, 검역본부)

* 위치추적기(환경부 100대, 검역본부 200대) 부착 철새가 AI 발생국 등을 경유 후 국내 도래여부 감시·정보교환(환경부 협조) 및 지자체, 협회 등을 통해 농가에 위험 알림

-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사이에 위치한 논을 사전에 파악, 철새가 도래하기 전에 벼집 제거 및 논 갈아엎기 추진

□ 차단 방역

- 방역본부 방역사 및 시·군별 전담인력을 통해 소규모 농장 정보 현행화 및 KAHIS에 등록 관리('14.9월중순~)

- 농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 강화(1회/월)

- 지구 내에서 위험시기*에는 AI 조기발견 및 수평전파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축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 후 반출** 의무화

* 위험시기 : ①야생철새·분변에서 AI(H5·H7형) 항원·항체 검출 등으로 AI 주의보 발령시 1개월, ②지구내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

** (현행) AI 발생 시에만 이동승인서 발급 → (개선) 방역관리지구내에서 저병원성 AI 등 위험성 발생시 이동승인서 발급

** 발급 신청(농장주) → 출하예정 가금 정밀검사(지자체) → 이상 없으면 발급(지자체)

-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에 대하여도 올인 올아웃(all-in-all-out)을 추진하여 AI 위험을 최소화
 - 지자체는 관내 오리농가의 올인 올아웃 추진여부 정기적 점검
 - * 특히, 계열사로 하여금 올인 올아웃 추진사항을 제출토록하고, 그 이행여부 점검 후 매월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, 미이행시 축산정책자금 등 불이익 조치 등 부과
- 소독시설 설치·운영 등을 통해 지구내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해 세척·소독 강화(지자체)
 - 진입로 및 축사주변 정기적 소독 실시(주 1회)
 - 축산단지형 지구는 분뇨·사료차량 등의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운영
 - 가금 밀집지역은 소독한 지정차량으로만 분뇨·사료 운반 의무화(15년)
 - * 계열사 등과 협의하여 법개정 이전이라도 분뇨·사료 차량 등 지정 검토 추진
- 축사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이행(농가)
 - 농장 내·외부 및 축사내부용 신발 구분 착용, 축사주변 충분한 생석회 도포 및 소독 강화 등 추진(주 2회 이상)
 - 단지화 되어있는 지구는 출입구를 단일화 하여 분뇨·사료차량 등에 대한 세척·소독시설 운영 등 농장 방역 강화
 - 축사내 야생조류·쥐 등 야생동물 유입방지를 위해 그물망·울타리 설치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(주 1회)
- 새로운 방역기준으로 조속히 축사가 보완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(지자체)
 - 방역관리지구농가 중심으로 시설취약농가 목록을 구축하여 집중 지원하되, 방역시설기준 의무사항 부과

□ 교육·홍보 강화

- 생산자단체·계열화사업자는 AI 방역관리지구내 소속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요령 교육·홍보(월 1회 이상)

- 지자체는 전담 공무원제(계열업체 및 생산자단체 공동)를 통해 주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·홍보 실시(월 1회 이상)
 - * 소독 실시, 울타리·소독조 등 방역시설 설치·운영 여부 등
- 시료채취, 농가 지도·점검 등 농가 방문시 AI 임상증상, 전파 경로 및 소독방법 등 교육(검역본부, 시험소, 방역지원본부 등)

□ 방역관리 실태 점검지도

- 중앙기동점검반 차단방역 실태 점검·지도 강화(월 1회)
 - * 상설조직인 중앙점검단(7명, 전남 8~9월⇒방역관리지구 10월) 운영, 집중 점검·단속 병행
- 계열사는 소속 농가에 대해 매월 방역관리 추진계획 수립, 그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지자체에 보고(월 1회 이상)
 - 지자체는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에 보고
- 생산자단체는 방역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점검 추진계획 수립, 그 실시결과를 지자체에 제출(분기별 1회)
 - 지자체는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에 보고
- 전담 공무원제(계열업체 및 생산자단체 공동)를 통해 주기적으로 농가 지도·점검(월 1회 이상)
 - * 소독 실시, 울타리·소독조 등 방역시설 설치·운영 여부 등

3 향후 추진계획

- 방역관리지구 특별방역관리 추진계획 수립·시행('14.10.19)
- 각 기관·단체는 매월 말 추진 실적 농식품부에 제출('14.10월말~)
- 농식품부는 추진실적 분석 후 매월 초 필요사항 조치('14.11월초~)

참고 1 AI 방역관리지구 방역특별관리 주체별 점검 목록표

□ 농식품부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철재 AI 위험 알람시스템 운영	'14.9월말	
② 시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 * 새로운 방역기준으로 조속히 축사 시설 보완	'14.10월~	
③ 방역관리지구내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축사 신축 비용 및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* 축사시설 현대화,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	'14.10월~	

□ 검역본부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 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② 중앙기동점검반 차단방역 실태 점검·지도 강화 * 상설 중앙점검단 운영, 집중 단속 병행	'14.10월~ (월 1회)	
③ 위치 추적기 부착 철재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	상시	

□ 지자체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시·군별 전담인력 지정, 지구내 농장정보 현행화	'14.9월중순~	
②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 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③ 진입로 및 축사주변 정기적 소독 실시	주 1회	
④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농가 지도·점검 및 교육 실시(지구내 농가 준수사항 홍보 병행 실시)	월 1회 이상	
⑤ 전화·입상 예찰 실시(방역본부와 협의하여 실시)	주 1회	
⑥ 정밀검사 강화(추진계획 수립 후 매월 농식품부 제출)	2회/분기(오리) 1회/분기(닭·기타)	
⑦ 오리 올인 올아웃 추진(계열사에서 제출한 올인 올아웃 추진사항 점검 후 매월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)	특별방역기간	
⑧ 가상방역훈련(CPX) 강화(추진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제출)	매년 지구내 전시군	
⑨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사이 눈을 사전에 파악, 벗집 제거 및 눈 갈아엎기 추진	철새도래전	
⑩ 축산단지형 지구는 분뇨·사료차량 등의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운영	'14.10월	
⑪ 가금 밀집지역은 소독한 지정차량으로만 분뇨· 사료 운반 의무화(현황 파악 후 추진계획 수립) * 계열사 등과 협의, 법개정 이전 분뇨·사료 차량 등 지정 추진	'15년	
⑫ 이동승인서 발급 후 반출 의무화(지구 내 위험시기)	위험시기	

방역본부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방역사 지정, 농장정보 현행화	'14.9월중순~	
② 전화예찰 실시(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시)	주 1회	
③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
농협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 지원 강화 *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시 농가 교육 홍보 병행	월 1회	
②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
생산자단체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지구내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요령 교육·홍보	월 1회 이상	
② 방역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점검(지자체에 결과 제출)	분기별 1회	
③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
계열화사업자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지구내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요령 교육·홍보	월 1회 이상	
②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(지자체에 보고)	월 1회 이상	
③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추진계획('14.9월말~)·실적('14.10월말~) 농식품부 제출	매월말	

축산농가

추진내용	진행일정	진행사항
①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및 소독 강화 * 농장 내·외부 및 축사내부용 신발 구분 착용	주 2회 이상	
② 그물망·울타리 설치 및 구서 작업 실시	주 1회	
③ 검역본부, 지자체, 협회 및 계열업체 등으로부터 소독방법 등 차단방역에 대한 방역교육 이수	월 1회	
④ 단지화 지구는 출입구를 단일화하여 분뇨·사료차량 등에 대한 세척·소독시설 운영	평시	
⑤ 위험시기 가축 이동시 지자체에 이동승인서 신청	위험시기	
⑥ 특별방역대책기간 오리에 대하여 올인 아웃 실시	특별대책기간	

참고 2

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(안)

□ AI 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

① 철새군집지역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: 철새군집지역 중에서 고병원성 AI가 최근 2년간 검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내 읍·면·동 또는 리 지역

- (고병원성 AI 검출) 지정된 철새군집지역 중에서 최근 2년간
 - i)철새나 분변·폐사체에서 AI 검출, ii)철새에서 H5·H7형체 검출, iii)인근농가에서 AI 발생

* 지정시기 : KAHIS 농가기준 매년 9월말(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)

* 철새군집지역 : 관계기관(환경부, 시·도 등)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이 지정

<철새군집지역 등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추정 결과>

○ 최근 2년간('13~'14) AI가 검출된 철새군집지역 : 16곳

- 철새나 분변에서 AI 검출 : 11곳(청원 미호천, 서천 금강하구, 서산 천수만, 천안 풍세천, 고창 동림저수지, 금강 하구둑, 영암 영암호, 제주 하도리, 당진 삽교호, 원주 섬강, 화성 시화호)
- 철새에서 H5 형체가 검출 : 3곳(서천 금강하구, 익산 만경강, 해남 고천암)
- 인근농가에서 AI 발생 : 9곳(청원 미호천, 서천 금강하구, 천안 풍세천, 천안 병천천, 고창 동림저수지, 해남 고천암, 나주 영산강, 영암 영암호, 함평 대동저수지)

※ 해당 철새군집지역(16곳) 반경 10km내 농가 : 7개 시·도, 24개 시·군·구, 80개 읍·면·동 또는 리 약 1,004농가 20백만수

② AI 중복 발생지역 : 현재까지 총 5회('03, '06, '08, '10, '14) 발생사례 중 2회 이상 발생한 읍·면·동 기준으로 지정

* 3개 시·도, 5개 시·군·구, 9개 읍·면·동, 약 94농가 3백만수

③ 가금농가 밀집지역

- 가금농가수가 5호 이상이고 사육마리수가 50만수 이상이거나, 반경 1km 이내에 30만수 이상 사육하는 읍·면·동 또는 리 중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금 집단사육단지

* 10개 시·도, 14개 시·군·구, 20개 읍·면·동, 약 574농가 15백만수

※ AI 방역관리지구 대상 : 11개 시·도, 29개 시·군·구, 123개 읍·면·동
 약 1,500농가(전체대비 31%) 33백만수(19%) 추정

□ AI 방역관리지구 해제기준

-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및 AI 중복발생지역으로서 AI 방역관리 지구는 지정된 5년이 경과한 후 철새도래지 변동상황, 지역별 가금 사육현황 등을 고려하여 AI 발생위험이나 발생시 파급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해제
- 가금농가 밀집지역은 매년 사육마리수(예; 연말기준) 등을 평가 하여 새로운 지역 지정 및 기존지구 지정 해제

□ 지정·해제권자

-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

참고 3

AI 방역관리지구 주요 대책

구분	세부내용	비고	
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신규 농가 및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하여 일반 지역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축사내로 AI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복·신발 보관 장소, 탈의실 등을 구비한 전실 설치 ☞ 농장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차량바퀴의 흙, 분뇨 등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설치 ☞ 농장주변 담장 및 울타리 설치 기준 강화 ☞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가금운반 차량 전용 소독시설 설치 등 시설관리 기준 강화 ◆ 지구 내 위험시기에는 농가에서 타 지역으로 가축 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 후 반출 의무화 	<p>축산법 시행령 및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</p> <p>* 기존 종축업·부화업·대규모 가축사육업은 시행 후 6개월 이내, 중소 가축사육업은 시행 후 1년 이내 설치</p> <p>AI 방역실시요령 개정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AI 발생 시 → 방역관리지구내 위험성 발생시 		
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존시설로 세척 소독이 어려운 분뇨·가금 운반 차량 등을 위한 거점별 스팀 세척·소독 시설 등 신규 지원 	<p>지자체운영, 158개소, 388억 지원 ('15~'18, 매년 40여개소 97억원)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금 질병전문가를 통한 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에 대한 AI 등 질병컨설팅 사업 지원 	<p>지자체운영, 2,800개소 140억 지원 ('15~'18, 매년 700개소 35억원)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방역관리지구에서 타 지역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신축 비용 및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	<p>축사시설현대화, 가축분뇨 처리시설설치 등 패키지 지원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KAHIS에 등록 관리하고 공동방제단('13년: 400개 → '14: 450)을 통한 소독 지원 	<p>농협 운영(농협예산 45억/년)</p>	
방역 특별 관리 (공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매년 AI 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위한 특별방역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전화·임상 예찰(필요시 → 주 1회) 및 정밀검사* 강화 * 오리 분기별 1회 → 2회, 닭·기타 반기별 1회 → 2회 ☞ 지자체 및 중앙기동점검반, 계열화사업자(계열농가) 차단방역실태 지도·점검 강화(필요시 → 월 1회) * 상설조직인 중앙점검단 운영('14.7월)시 집중 점검·단속도 병행 ☞ 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농가 교육·홍보 강화 (필요시 → 월 1회) ☞ 가상방역훈련(CPX) 강화 등 비상시 대비 철저 (매년 도별 3개 시·군 이상 → 지구 내 전 시·군 실시) ☞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에 대하여도 올인 올아웃(all-in-all-out)을 추진* 	<p>매년 특별방역기간 전 9월 수립하여 시행</p> <p>지자체·방역본부 예찰, 검역본부·시험소 검사</p> <p>지자체, 중앙기동점검반, 계열화사업자, 중앙점검단은 농가 차단방역실태 점검</p> <p>지자체는 전담공무원 교육·홍보 실시</p> <p>지자체는 비상시 대비 가상방역훈련 강화</p> <p>오리농가는 올인 올아웃 추진, AI 위험 최소화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사이에 위치한 논을 사전에 파악, 철새 도래 전 뱃집 제거 및 논 갈아엎기 추진 	<p>지자체는 철새도래지 인근 먹이감 제거 철새사전 차단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가금밀집지역(단지형 지구)는 출입구를 단일화 하여 분뇨·사료차량 등에 대한 세척·소독시설 운영 	<p>농가는 가금밀집지역 출입구 단일화하여 농장 방역 강화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가금밀집지역은 소독한 지정차량으로만 분뇨·사료 운반 의무화 	<p>지자체는 가금밀집지역 출입 차량 지정하여 관리 강화</p>	
	(철새 도래지)		
	(가금 밀집지)		

참고 4

현재 기준 시 방역관리지구 현황(추정)

